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2004년 06월 01일, 개정 2005년 12월 01일, 개정 2006년 12월 01일
개정 2007년 12월 01일, 개정 2008년 11월 01일, 개정 2009년 03월 01일
개정 2009년 11월 01일, 개정 2015년 01월 01일, 개정 2016년 09월 01일
개정 2022년 07월 01일, 개정 2025년 01월 01일, 개정 2026년 01월 01일

소관부서 : 대학원교학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산대학교 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본교 교직원 본인과 자녀 및 배우자
4. 본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구성) 장학금 설정과 장학생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1.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제도의 운영방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장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관장) 장학금 관리와 운영은 대학원에서 주관하고 그 지급에 관한 업무

는 학생·사무지원처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1.1.>

제 3 장 장학금의 구분 및 등급

제8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2. 교외장학금

제9조(장학금의 등급) 교내장학금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7.12.01., 개정 2015.1.1.>

1. I 종 장학금 :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 II 종 장학금 :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III 종 장학금 : 수업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IV 종 장학금 :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4-1. V 종 장학금 : 수업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4-2. VI 종 장학금 : 수업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삭제 <2007.12.1.>

제 4 장 장학금의 세부 지급 규정

제10조(교내장학금) ① 일반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06.12.1., 2007.12.1., 2008.11.1., 개정 2007.12.1., 2015.1.1., 2025.1.1., 2026.1.1>

1.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이후,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의 15%에 해당하는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2. 본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3. 공무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산하 기관 재직자)에게는 IV종 장학금을 지급하되, 연구장학금과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4. 본교 교직원 및 자녀, 배우자 장학금

본교 및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직 교직원 본인, 자녀 및 배우자가 수학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고 매학기 II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교원의 경우 강사는 제외하며, 직원은 정규직에 한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06.12.1., 개정 2005.12.1., 2006.12.1., 2007.12.1., 2008.11.1., 2015.1.1., 2025.1.1., 2026.1.1.>

1. 신입생 입학 면학장학금
- 대학원신입생 전원에게 IV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최초학기(1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가. 전공별, 학년별로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0.0% 이내인 자에게는 V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전공별, 학년별로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0.01% ~ 40.0% 이내인 자에게는 VI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평균 평점이 높은 자, 전공이수 교과목의 점수가 높은 자, 연소자순으로 지급한다.

라. 위의 가, 나, 항의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3. 본교 교직원 및 자녀, 배우자 장학금

본교 및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직 교직원 본인, 자녀 및 배우자가 수학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고 매학기 II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교원의 경우 강사는 제외하며, 직원은 정규직에 한한다.

4. 삭제 <2005.12.1.>

5. 공무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산하 기관 재직자)에게는 IV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6. 본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삭제 <2008.11.1.>

④ 제2항 제2호의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1., 개정 2005.12.1., 2006.12.1., 2008.11.1., 2016.9.1.>

1. 제2항 제2호의 성적우수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사정일 기준으로 해당 전공별, 학년별 재학생이 5명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단, 연구등록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재학생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의 외국인유학생인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유학생의 장학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

⑥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3.1.>

제11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해당 장학금의 지급요망 조건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의 중복지급 제한) 동일 수혜기간 내에 2종류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성적우수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

제13조(장학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 2016.9.1.>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미만인 자

2. 해당학기 평점이 3.0 이하인 자

3. 재학중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장학금을 지급 받을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단, 군 입영으로 등록기간 이전에 이미 휴학하여 등록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제대 후 복학 시 지급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장학금지급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장학금지급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래 각 특수대학원별로 있던 2004년 5월 31일 이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장학금지급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1호, 4호, 5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장학금지급규정 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 제1항 1호, 4호, 5호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장학금지급규정은 200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장학금지급규정은 200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장학금지급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 10조의 5는 2017학년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2.7.1.>

외국인유학생 장학종류, 선발기준 및 수혜금액

■ 신·편입생 장학금

장학종류	선발기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영어능력시험(IELTS) 6.0 이상 소지자	수업료의 50% 감면	수업료의 50% 감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미소지자 또는 영어능력시험(IELTS) 5.5 이상 소지자	수업료의 25% 감면	수업료의 30% 감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미취득자의 경우 본교의 『와이즈유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언어능력시험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함

■ 재학생 장학금

장학종류	선발기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영어능력시험(IELTS) 6.0 이상 소지자	수업료의 50% 감면	수업료의 50% 감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미소지자 또는 영어능력시험(IELTS) 5.5 이상 소지자	수업료의 25% 감면	수업료의 25% 감면
	재학 중 한국국적 취득	취득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감면	

※ 제13조(장학금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